

PART 03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1. 장기요양 인정조사

- 01.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3
- 02.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3
- 03. 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 4
- 04.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4

2.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0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4
- 0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4
- 03.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변경** 5
- 04.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변경** 6
- 05. 등급판정도구는 무엇인가요? **변경** 7
- 06.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
- 07.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7
- 08. 장기요양등급판정 소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8

3. 등급판정 결과

- 01. 지체장애 2등급인 지체장애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3등급인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 8
- 02. 옆집 할머니나 우리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변경**
..... 10
- 0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치매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왜 등급에 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11
- 04.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변경**
..... 11
- 05. 등급외 A, B, C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14
- 06.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 14
- 07.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회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5
- 08.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는 없나요? 15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

03

1. 장기요양 인정조사

01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02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일반사항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II.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총 90개인데, 그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된 항목은 52개 항목이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전체 항목입니다.

03

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의결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04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요양 직원이 조사합니다.

2.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0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써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03 ▶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변경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 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05 ▶ 등급판정도구는 무엇인가요? 변경

- 등급판정도구는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와 실제 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화한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의 연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 또한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2018.7.23.),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06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료·보건·복지 전문가 그룹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심신상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한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심의·의결합니다.
- ※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07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의 현실(지역밀착형서비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합니다.

참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08

장기요양등급판정 소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등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상태와 의사소견서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등급판정소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
- 운영 :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등급판정 결과

01

지체장애 2등급인 지체장애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3등급인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 지체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단순히 외부 신체의 장애(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데 비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02

옆집 할머니나 우리 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변경

-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정조사는 5개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을 실시하여 신체, 정신적인 부분이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지·행동변화)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르신의 심신상태(인정조사 52개 항목)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합하여 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시간의 개념으로 산출한 점수로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 등급이 구분됩니다.
- 등급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판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인정조사결과서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정조사 → 조사항목의 원점수 산출 → 100점 환산점수 산출 → 52개 조사결과와 산출 값을 8개 서비스군 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요양인정점수 산출
 - 조사결과서 및 요양인정점수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최종심의
 - 의사소견서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결과서 등 심의자료를 심의하여 수급자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함
- ① 원점수 산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하여 인정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점수 산출

5개 영역	기능상태 조사결과	원점수
기본일상	부분도움 : 식사하기 완전도움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35
인지기능	단기 기억장애, 시간지남력 없음	2
행동변화		0
간호처치		0
재활영역	우측상하지 불완전운동장애, 좌측상하지 완전운동장애, 어깨관절 및 고관절 한쪽관절제한, 발목양관절제한	20

② 100점 환산점수 : 원점수를 바탕으로 100점 환산점수

5개 영역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
계	57	172.93
기본일상	35	88.4
인지기능	2	33.81
행동변화	0	0
간호처치	0	0
재활영역	20	50.72

③ 8개 서비스군 별 영양인정점수 산출 : 52개 조사결과, 원점수, 100점 환산점수를 8개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영양인정점수 산출

총 영양인정점수	8개 서비스군별 영양인정점수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간접지원	행동변화 대응	간호처치	재활훈련
104	17.2	12.5	23.4	14	19.7	0.8	11.6	4.8

④ 장기요양인정점수 및 심의자료 작성·제출 : 8개 서비스군별 영양인정점수의 합인 104점 및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

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심의자료, 의사소견서 내용,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등급 판정

참고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인정점수’란 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란 단순히 식사, 배설, 치매 등 몇 가지 간단한 심신상태 또는 요양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닙니다.
- 전국 공통의 척도로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즉 요양 인정점수)’으로 하고 이는 급여비용의 수가나 월 한도액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0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치매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왜 등급에 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할지라도 옷갈아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가기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등급을 받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인정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목욕서비스 제공 등의 기타 지역사회 노인건강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4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 B, C)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비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등급외 A, B형 • 중위소득 기준 16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 중위소득 기준 160% 이하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로 구성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 내
시군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무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2순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 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독거노인 사랑잇기서비스	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기본대상자 지원가능	민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무료)
보건소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무료)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선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환자 및 질병관리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사업		대상	비고
	치매안심센터	- 만60세이상 치매노인	- 치매 조기검진사업 - 치매노인 등록관리사업 - 치매가족지원사업 - 치매쉼터 운영사업 -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치매검진사업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 •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 기타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 1단계 선별검사 (보건소) • MMSE-DS • 검진비 지자체 부담 - 2단계 진단검사 (협약병원)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검진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 3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검진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기타	등급외 A형, B형, C형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활용
공단		등급외 판정자 중 공단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그 밖의 민간단체		등급외 A형, B형, C형	- 안전확인, 말벗, 여가문화교육 -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시·군·구 예산에 따라 시행기간 변경 가능

05 등급의 A, B, C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지 못한 분을 등급의 A, 등급의 B, 등급의 C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신체 및 인지 기능상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의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단기 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 등급의 B :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45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단기 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의 C :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06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 등급의 A, B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등급외C 판정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07

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 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는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 후 공단사업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보완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자	제공내용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p>등급외판정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자</p> <p>① 고혈압(I10), 당뇨병(E11) 환자로 진찰료 본인부담 감경내역이 있는 자</p> <p>② 최근 1년간 고혈압(I10~I15) 또는 당뇨병(E10~E14) 진료내역 있는 자</p> <p>③ 검진사후 유질환군 대상자 중 급여 내역이 확인된 자</p>	<p>①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관련정보제공 서비스(건강문고, 건강수첩 등), 자가 측정기(혈압기 및 혈당기) 대여, 만성질환 관련 전문 건강 상담 등</p> <p>② 선택형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길잡이 상담을 통한 개별건강상담 등</p>
건강백세 운동교실	65세 이상 등급외판정자 중 사업참여 희망자	힘버제조,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서 실버(타이치, 기)체조, 요가, 표준운동 프로그램, 댄스 스포츠 등